

# 천안 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

##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A1	공동주택용지	
	239% 이하	25층 이하
B1~B2	단독주택용지	
	200% 이하	4층 이하
C1	근린생활시설용지	
	250% 이하	5층 이하
P	주차장용지	
	540% 이하	6층 이하

중 2-106

중 2-274

중 1-175

중 1-550

대 3-19

대 3-23

소 1-549

소 1-54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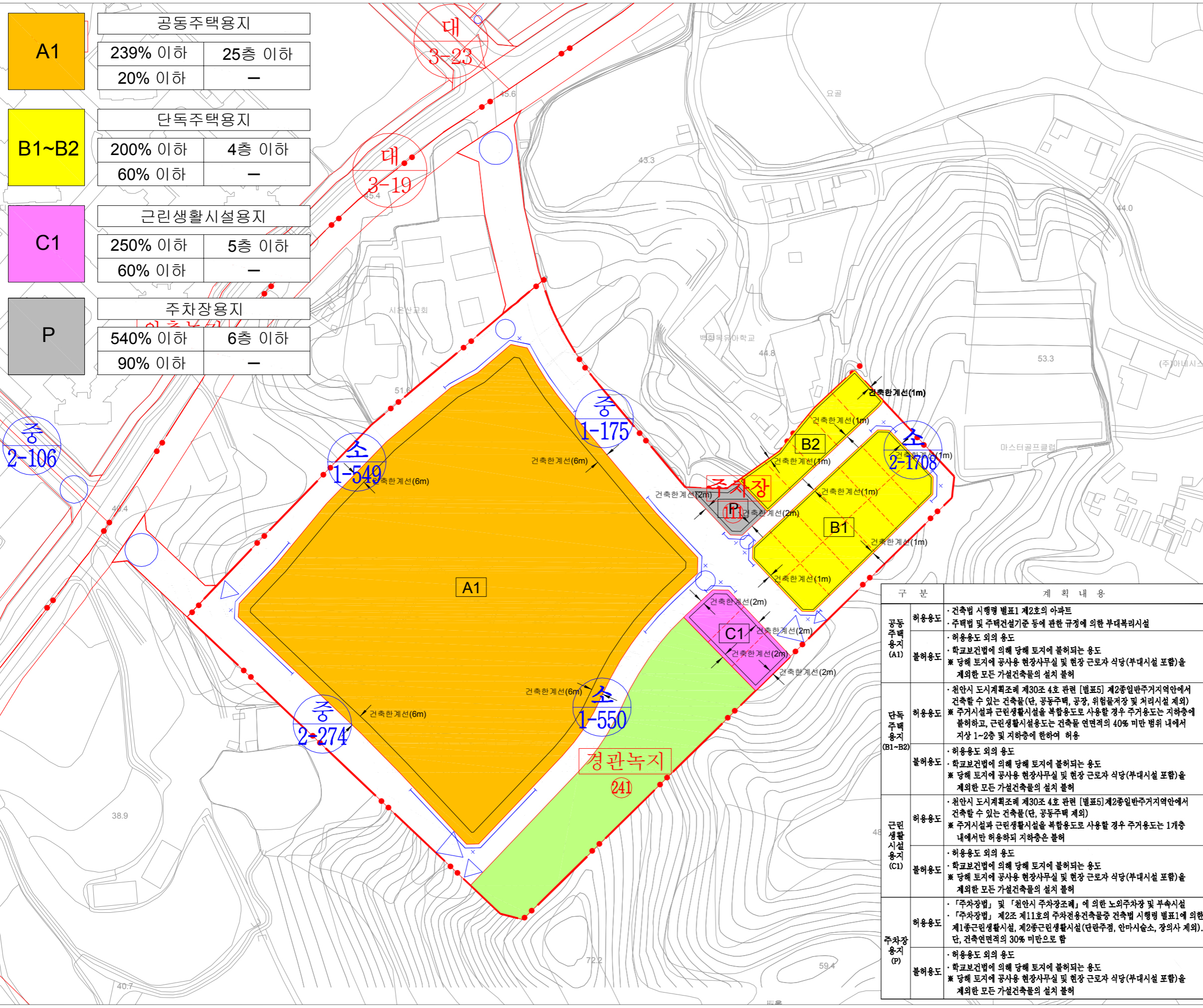
소 1-550

소 2-274

소 2-274

소 2-274

소 2-274

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대 로
- 중 로
- 소 로
- 가구경계선
- 획지경계선
- 건축한계선
- 차량출입불허구간
- 공동주택용지
- 단독주택용지
- 근린생활시설용지
- 경관녹지
- 주차장

구 분	계 획 내 용
공동주택용지(A1)	허용용도 ·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· 허용용도 외의 용도
	불허용도 · 학교보건법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· 당해 토지에 공사용 현장사무실 및 현장 근로자 식당(부대시설 포함)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
단독주택용지(B1~B2)	허용용도 ·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4호 관련 [별표5]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단, 공동주택, 공장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외) ·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도는 지하층에 불허하고, 근린생활시설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40% 미만 범위 내에서 지상 1~2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
	불허용도 · 허용용도 외의 용도 · 학교보건법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· 당해 토지에 공사용 현장사무실 및 현장 근로자 식당(부대시설 포함)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
근린생활시설용지(C1)	허용용도 ·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4호 관련 [별표5]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단, 공동주택 제외) ·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도는 1개층 내에서만 허용되되 지하층은 불허
	불허용도 · 허용용도 외의 용도 · 학교보건법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· 당해 토지에 공사용 현장사무실 및 현장 근로자 식당(부대시설 포함)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
주차장용지(P)	허용용도 · 「주차장법」 및 「천안시 주차장조례」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· 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 제외), 단, 건축연면적의 30% 미만으로 함
	불허용도 · 허용용도 외의 용도 · 학교보건법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· 당해 토지에 공사용 현장사무실 및 현장 근로자 식당(부대시설 포함)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

가구번호	허 용 용 도	
	용적률	최고높이
건폐율	최저높이	

